

건설업법 시행령중 개정령

지난 92년 12월 26일 건설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건설업면허신청기간등의 공고) 건설업의 신규면허는 건설부장관이 미리 면허의 종류별로 공고한 신청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건축공사면허소지자로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각각 해당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2. 다른 법률에 건설업면허의 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p>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p> <p>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2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일 것. 다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임원중 1인이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 	<p>제9조 2호를 동조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은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그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p>제10조제2항제5호중 “경영업무담당자”를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자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영업을 한 자일 것</p> <p>제17조(건설업자의 신고사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함은 건설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성명 및 자본금을 말한다.</p> <p>제22조(도급한도액의 적용) ②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예산회계법 제7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건설공사를 말한다.)마다 이를 적용한다. ④1건의 공사가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분야의 2이상의 공사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p> <p>제26조(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과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36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금액의 규모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절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사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1급 이상 3.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기사2급 이상</p>	<p>제17조 1항중 “임원의 성명 및 자본금”을 “임원의 성명”으로 한다.</p> <p>제22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5”를 “예산회계법 제87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1건의 건설공사가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2종이상의 건설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의한 각 건설공사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p> <p>제26조제2항중 “5배”를 “5배(개인인 경우에는 2.5배)”로 한다.</p> <p>제36조 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및 과징금의 총액이 법 제50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 징 금 의 금 액
1.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제50조제1항제1호	2 월	1,000만원
2.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 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법제50조제1항제2호	3 월	1,500만원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년평균액이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법제50조제1항제3호	4 월	2,000만원
4.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危害를 끼친 때	법제50조제1항제4호	4 월	2,000만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는 때	법제50조제1항제5호	3 월	1,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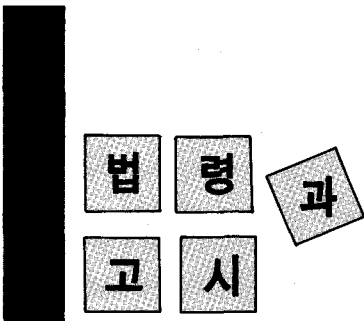
(별표6)중 가의 제1호란 과징금의 금액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제2호란 및 제5호란 과징금의 금액 “1,500만원”을 각각 “3,000만원”으로 하며, 제3호란 및 제4호란 과징금의 금액 “2,000만원”을 각각 “4,000만원”으로 한다.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이유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의 결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업자별 전문화를 도모하며, 부실시공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설업자의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도급한도액결정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시 자본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본금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를 폐지함(령 제17조제1항).
- 나. 현재는 건설공사의 입찰시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토목공사실적 및 건축공사실적의 구분없이 도급한도액을 결정하고 있어 건설업자별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토목 및 건축으로 구분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도록 함(령 제22조제4항).
- 다. 현재는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결정시 법인은 자본금을,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등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인보다 자산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개인이 그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은 도급한도액을 결정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도급한도액을 결정하도록 함(령 제26조제2항).
- 라. 부실시공등 하자있는 시공을 한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상향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령 별표 6). <법제처 제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지난 92년 12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 조(적용제의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 2조제 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p> <p>1. 전기사업법 제 3조제 7호의 전기 공작물. 다만, 댐·수로·저수지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p> <p>제 9 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95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p> <p>제 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2 조 제 1호중 “전기사업법 제 3조제 7호의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 제 2조제 7호의 전기설비”로 한다.</p> <p>제 9 조제 6 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95조의 3 제 3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12조제 5항”으로 하고, 동조제 8호중 “특례규정 제 4조”를 “특례규정 제 2조제 2항”으로 한다.</p> <p>제 10 조 제 1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제 4항중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 12 조 (소위원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된다.</p> <p>제 13 조 (심의요청)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제 9조제 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p> <p>1. 제 39조제 1항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p> <p>2. 제 39조제 1항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제 39조제 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전체공사의 기본설계(기존시설의 확장·보수등의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 및 실시설계(중앙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p> <p>제 15 조(의견청취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17 조 (수당및 여비)</p>	<p>제 12 조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제 13 조 제 1항제 1호중 “제 39조제 1항제 1호 또는 제 2호”를 “제 39조제 1항제 1호”로, “100억원미만”을 “200억원미만”으로 하고, 동항제 2호중 “제 39조제 1항제 1호 및 제 2호”를 “제 39조제 1항제 1호”로, “100억원이상”을 “200억원이상”으로 한다.</p> <p>제 15 조 제 1항중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법 제 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p> <p>제 17 조의 제목 “(수당및 여비)”를 “(수당 및 여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시·도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시·도의 5급이상 공무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 19 조 제 1항중 "50인(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00인)이내"를 "80인(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2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 2항 단서중 "7인"을 "12인"으로 한다.</p>
<p>제 20 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이내로 구성한다.</p> <p>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 20 조 제 1항중 "50인이내"를 "8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 2항 단서중 "10인"을 "12인"으로 한다.</p>
<p>제 39 조 (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공사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액이 30억원이상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 4. 법 제2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이고 당해 건설공사를 	<p>제 39 조제1항제 1호중 "30억원이상인 공사"를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하고, 동항제 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 3호중 "100억원이상인 공사"를 "200억원이상인 공사"로 한다.</p> <p>제39조 제 1항제 4호중 "100억원이상이고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한 행정기관"을 "200억원이상이고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으로 하고, 동항제 5호중 "제 1호"를 "제 1호 내지 제 4호"로, "3억원이상인 공사"를 "10억원이상이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하며, 동항에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현행	개정안
<p>허가한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p> <p>5.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3억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제1항제2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고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p> <p>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5천만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인 공사, 이 경우 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50 조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p> <p>4.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이 시공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p> <p>제 51 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p> <p>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 52 조 (시공감리자의 업무등)</p> <p>③ 감리전문회사는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된 공정별로</p>	<p>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p> <p>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p> <p>나. 터널·지하철·댐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p> <p>다. 막구조·현수구조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 공사</p> <p>라. 국내에서의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p> <p>제 39 조 제 2항제 1호중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 2호중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고”를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이고”로 하고, 동항제 3호중 “제 1호”를 “제1호 또는 제 2호”로, “5천만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인 공사”를 “1억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한다.</p> <p>제 50 조 제 1항제 4호중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을 “기타 공사발주관서의 장”으로 한다.</p> <p>제 51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법·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기술이 있는 다른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 52 조의 제목 “(시공감리자의 업무등)”을 “(감리자의 업무 및 선정)”으로 하고, 동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5항중 “제 4항”을</p>

현행	개정안
<p>별표 1에 의한 전문분야별 기술사·토목시공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책임시공감리자로, 별표 1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를 책임시공감리자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자로 선정하여 각각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경력·기술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시공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의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시공감리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유로 책임시공감리자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시공감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 6항으로 하고, 동조제 4항을 동조제 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감리전문회사는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시공감리자로, 별표 1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를 책임시공감리자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 2. 건축사 3. 별표 1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 <p>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공사현장의 상주에 관한 사항과 감리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p> <p>[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표 2]의 <부표 1>·<부표 2> 및 <부표 3>중 “만능시험기(용량 1톤)”을 각각 “만능시험기(용량 5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다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 4 조관련)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 4 조관련)			
종류 및 기술분야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종류 및 기술분야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토 목	토질및 기초,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 공항, 철도, 수자원 에너지토목, 상·하수도, 관계배수 및 농지조성, 시공	토목, 토목 재료 시험	토목, 토목 재료 시험	토 목	토질및 기초·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수자원 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	토목·토목 재료 시험	토목·건설 재료 시험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	건축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건축 설비·의장	건축·건축 설비·의장
기계	건설기계, 냉난방 및 냉동기계	건설기계,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건설기계,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국토개발	지역 및 도시계획, 조경, 측지	지역및 도시 계획, 조경, 측 지	지역및 도시 계획, 조경, 측 지	국토개발	도시계획·조경·측지	도시계획 조경측지	조경, 측지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 공사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의 수를 증원하며, 건설기술인력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건설공사의 감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는 3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원이상의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는 10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200억원이상의 공사로 조정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공사에서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공사로 조정함으로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대형건설공사에 한하여 보다 깊이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함 (령 제 39조)
-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건설기술의 세분화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부족을 해소 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 및 국방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수를 현행 50인이내에서 80인이내로 증원함 (령 제 19조 및 제 20조).
- 다. 현재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만이 책임시공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능력에 있어서 기술사와 거의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술자도 책임시공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감리활성화에 따른 기술인력의 부족을 해소함 (령 제 52조 제 3항). 〈법제처 제공〉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지난 92년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 조(정의) ①(생략)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로서 중소기업업자(건설업자중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 가. 건설업법 제 2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나. 전기공업사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다. 전기도신공사법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라. 소방법 제 5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p> <p>〈신 설〉 〈신 설〉</p>	<p>제 2 조 (정의)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중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써 중소기업자인 건설업자에게 가. 제2조 제3호의 라. 소방법제 5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건설공사업자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4. 중소기업자인 건설업자중 건설업법·전기공사사업법·전기통신공사법·소방법 기타 관계법률</p>

현행	개정안
<p>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2. (생략)</p> <p>3.중소건설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제 2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p> <p>④ 사업자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 또는 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한 사업자로부터 직접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하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⑥ (생략)</p> <p>⑦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건설업법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 공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소방법 제52조제 1항제2</p>	<p>의 규정에 의한 연간도급한도액(연간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연간도급한도액과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건설위탁을 받은 자의 연간도급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인 건설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p> <p>1.~2. (현행과 같음)</p> <p>3. 중소기업자인 건설업자로서 제2항 제3호 및 제 4호의</p> <p>④</p> <p>.. 제2조 제 3호</p> <p>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p> <p>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 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본다.</p> <p>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 3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p> <p>⑥~⑦(현행 제 5 항 내지 제 6 항과 같음)</p> <p>⑧</p> <p>..... (건설업법 제 2 조 제1호의</p> <p>..... 소방법 제 52조 제 1항 제 2호의</p>

현행	개정안
<p>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u>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의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한다.</p> <p>.....</p> <p>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제 4 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률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다.</p>
<p>제 15 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①~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 15 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 22 조(위반행위의 신고등) ①~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 22 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범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 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23 조 (보고 및 조사)</p> <p>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집단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 23 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p> <p>제 25조의 2(공탁) 제 25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p>

현행	개정안
<p>제 27 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p> <p>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생략)</p> <p>제 29 조(벌칙) 제 27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 30 조(벌칙) 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 18조 내지 제 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2.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p> <p>3.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자</p> <p>4. 제 25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 27 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현행 제 2항과 같음)</p> <p>제 29 조(벌칙) 제 27조 제 3항의 ……………</p> <p>제 30조(벌칙) ① (형행과 같음)</p> <p>② …………… 1억 5천만원 이하의……</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 ……………</p> <p>③ 제 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 30 조의 2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 2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p>

호 령	개 정 안
<p>제 32 조(고발) ① 제 30 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p> <p>② (생략)</p>	<p>2. 제 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항 제 3호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p> <p>3. 제 2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p>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 32 조 (고발) 제 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원사업자가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더라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법 제2조 제5항).
2. 원사업자가 선급금 또는 관세등 환급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일정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 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법 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
3.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할인률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률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
4.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거래의 종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함(법 제23조).
5.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정등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므로 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의 2). <법제처 제공>

석면 등을 제조·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 38조)

■ 석면을 포함한 9종의 허가대상물질은 인체에 대한 발암성 또는 인체에 극히 유해한 특성을 가진 물질로서 이의 제조·사용시에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설비를 갖추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질 명 사	용
석 면	브레이크라이닝, 석면포, 석면판 건축자재등의 제조
벤 지 단 염 산 염	염료, 안료 등의 원료
알파나프틸아민과	염료, 안료 등의 원료
베 릴 림	감속제, 플라스틱등의 성형용금형
오르토틸리딘과	염료중간체, 분석용 시약
디클로로벤젠과	염료, 안료 등의 원료
염소화비페닐 (PCB)	염료, 도료, 합성수지의 제조
디아니시딘과	염료, 안료 등의 원료
벤 조 트 리 클 로 리 드	농약, 염료, 안료 등의 원료

■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기준(노동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준에적합한 시설·설비를 완비한 후 제조·사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서류검토 및 실태점검을 거쳐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①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사용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 38조 제 5 항)

② 제조·사용 허가 후에도 허가당시의 시설·설비를 적정하게 유지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부적합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법 제 38조 제 4 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92년 12월 8일에 공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제조업
-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다. 건설업
- 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마. 숙박 및 음식점업
- 바.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사. 금융 및 보험업
- 아.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자. 교육서비스업
- 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카.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타. 가사서비스업
- 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사업년도말 결산확정의 결과 보유주식의 평가가 증가되어 출자총액이 투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만,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 5.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이내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을 “제1항에서 ‘순자산액 이라 함은’으로, 동항 본문중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을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격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액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년도종료일 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①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잔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보증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자기자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이하 “채무보증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도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은행 및 국민은행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년도종료일 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제1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순자산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출자총액”은 “채무보증총액”으로, “출자한도액”은 이를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상호경쟁관계에 있는”을 ‘상호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경쟁관계에 있는”을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으로 한다.

제13조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내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채무보증관련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6항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중 “대규모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를 ‘제10조, 제10조의2’로 하며, 동조제3항중 “대규모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제9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1년간은 통지가 있는 날의 채무보증총액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를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전단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를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로, “영업의 일부양도”를 “영업의일부양도, 당해 범위만 채무보증의 취소”로 하고, 동항후단중 “이 경우에” 다음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새로 취득한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를 삽입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 “제1항의 경우에”를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당해 범위만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범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대상주식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의 내용을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의 10일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로 하고, 동항단서중 “산업합리화”를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로 하며, 동항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9조제3항중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계약이”를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를 “당해위반행위의 실행이 있는 날부터”로 한다.

제5항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3천만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중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를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로 한다.

32조제1항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협정이나 계약”을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국제계약의 체결신고)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국제계약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국제계약의 신고 또는 인가신청등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가신청등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의 제목“(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본문중 “제2조제1항 바 목에 규정된 사업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제10조”를 “제10조,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제67조제7호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6항(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사항 또는 변경계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의 체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8.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위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위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위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고발)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는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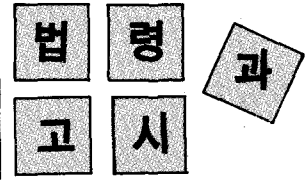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경제력집중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출자총액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제도를 보완하고, 범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5년간만 예외를 인정함(법 제10조제1항제5호).
2. 경제력집중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국내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당해 회사의 자기자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이내로 제한하되,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단계적인 축소를 위하여 3년의 상기간을 인정함(법 제10조의2 및 부칙 제3조).
3.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이 계약·협정·결의등의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개선함(법 제19조제1항 단서).
4. 빈발하는 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억제 및 시정을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5.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제처 제공>



'9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범위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범위를 결정, 고시하였다.

1. 199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 사업주의 범위

가. 1993년도 공사실적액이 128억원 이상인 사업주

나.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으로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자기공사의 경우 대지비 등)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1993년도 건설업의 사업주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산정은 1993년도 공사실적액이 128억원인 사업주를 상시 300인 고용 사업주로 보고, 각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대하여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근로자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서 적용제의 인원을 뺀 수에 기준고용률을 곱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해야 할 사업주는 1992년도 공사실적액이 101억2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와

1993년도 공사실적액이 128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4. 적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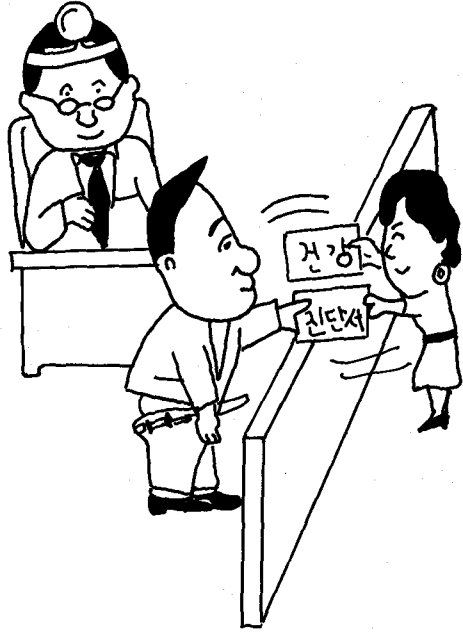
이 고시는 1993.1.1부터 1993.12.31까지 적용한다.

건축허가제한중 해제 및 일부용도의 제한기간연장

건설부는 건축 30420-2084(92년6월18일)호 및 건축 30420-2688(92년7월30일)호와 관련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2월31일까지 건축 허가제한중인 건축물중 수도권지역(5개 신도시 구역 제외)안의 위락시설에 한하여 '93년6월30일까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지역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92년1월1일부터 해제 조치토록 하였다.

재해없는 산업사회

“
**근로자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근로자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 43조)**
 ”



■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 43조 제 1항 및 제 5항)

- ① 채용시 및 작업배치전
- ② 일반 : 특수 검진 대상이 아닌 모든 근로자 1년에 1회, 단 사무직 2년에 1회
- ③ 특수 :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6월에 1회
 분진, 소음, 이상기압, 진동, 유해 광선 취급업무-1년에 1회
- ④ 임시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규칙 제 98조 제 4 호)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전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 43조 제 4 항)

* 특히 위의 조치 이외에 정밀진단, 요양 및 장해보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 실시결과 개인표는 해당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강진단 실시후 2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유소견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질병유소견자는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 43조 제 3 항)

■ 특수 검진의 경우 검진실시 20일전까지 유해요인별 검진대상을 명시한 특수 건강진단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 99 조의 그 및 제 99 조의 3)

* 특정기간에 검진이 집중되어 부실검진이 우려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은 검진 실시 계획서에 기재된 검진일정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검진 실시시기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 99 조의 4)